



제 439회 국회(정기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등〉

■ 고민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85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5
1. 총괄적 검토	5
가. 제정의 필요성	5
나. 법률안의 구성체계	9
2. 주요 조문별 검토	10
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10
나. 책무 규정(안 제3조~제6조)	13
다.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8조)	15
라.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안 제9조)	17
마. 사회정서역량 함양 교육(안 제11조)	20
바. 학생 정서행동문제 발견 및 학교 상담(안 제12조 및 제13조)	24
사. 중앙·지방 학생마음건강진흥원(안 제14조)	30
아.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 및 학생회복지원기관(안 제15조 및 제16조) ..	33
자. 학교지원 정신건강전문기관(안 제17조)	37
차. 학생 정서행동지원조력인(안 제19조)	40
카. 교원의 연수지원 등(안 제20조)	42
타. 상훈 등(안 제21조)	46
파. 비밀 유지의 의무 및 벌칙(안 제23조 및 제25조)	4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고민정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3. 6.

3. 회 부 일 : 2026. 3. 9.

II. 제안이유

우울증,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매년 수백 명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보다 훨씬 많은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를 하는 것으로 밝혀짐. 이는 학생의 마음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함.

교육부에서 학생 마음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발견-상담-치료의 체계를 마련했으나 고위기 학생 발견 공백, 상담 중심 지원, 정보연계 미흡 등 여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인과 학생의 차이를 고려한 학생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역시 높음.

학생의 마음건강 문제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임. 따라서 국가의 특별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이에 국가가 학생의 마음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실태조사, 사회정서교육, 상담체계 표준화 근거, 조력인 제도 등을 담은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정서행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에게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문제 해결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에게는 학교 교육환경을 마련하며, 보호자에게는 학생이 마음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적절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주체별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라.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마. 교육부장관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학교의 장은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정서행동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정서행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상담실에서 학생 및 보호자를 상대로 상담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생상담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전문기관으로 중앙학생마음건강진흥원 및 지역학생마음건강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4조).

자. 교육감은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 학생회복지원기관 및 학교지원

정신건강전문기관등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학교에서 정서행동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0조).

카. 교육감은 사회정서역량 함양 교육 수행 및 학생의 정서행동문제 해결 등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기관 또는 교원 등에게 상훈 및 근무성적 평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타. 정서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지원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5조).

파. 중앙진흥원, 지역진흥원, 지원센터, 학생회복지원기관 또는 학교지원 정신건강전문기관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7조).

IV.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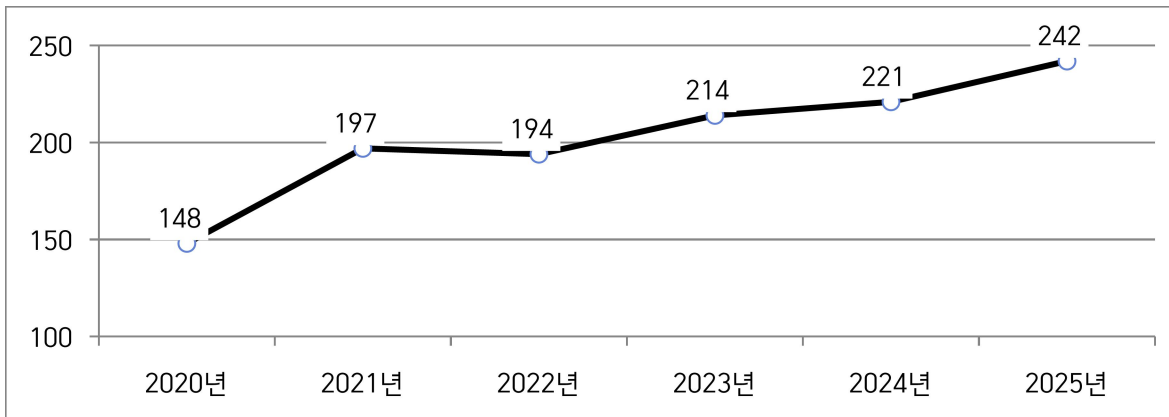
1. 총괄적 검토

가. 제정의 필요성

- 최근 초·중·고 학생의 불안/외로움 경험률이 각각 2020년 대비 2024년에 11.2%에서 14.1%, 14.1%에서 18.8%로 증가하였고, 자살 학생 수도 2020년 148명에서 2025년 242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학생 마음건강 관련 지표가 악화되고 있음. 또한 학생 상담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정신건강과 대인관계, 학업·진로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¹⁾.

< 연도별 자살 학생 수 >

(단위: 명)



< 2024년 위(Wee) 센터 상담실적 현황 >

(단위: 건)

상담분야	정신건강	정보제공	대인관계	학업/진로	일탈/비행	성격	기타	계
건	142,682	68,466	63,478	59,856	58,997	38,256	49,192	480,927
비중(%)	29.7	14.2	13.2	12.4	12.3	8.0	10.2	100

자료: 교육부

1) 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2025.12.

□ 교육부는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위(Wee) 프로젝트를 실시 중임. 위(Wee) 프로젝트는 학교 내 상담실인 위(Wee) 클래스, 시·도교육청 소재 상담시설인 위(Wee) 센터, 위탁교육시설 형태의 위(Wee) 스쿨 등으로 구성되며,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종합 상담·치유 시스템임.

그러나 기존의 위(Wee) 프로젝트는 별도의 법률상 근거 없이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에만 근거를 두고 운영²⁾되어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낮다는 우려가 있었음. 또한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조치를 법률상 근거 없이 행할 경우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조치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

□ 이에 제정안은 위(Wee) 센터, 위(Wee) 스쿨 등 기존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사회정서역량을 강화하는 학교 기반의 보편적 마음건강 교육인 사회정서교육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1.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정안에 따르면 학생의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지역 간 지원 수준의 차이를 줄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활용한 상담 및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학생 마음건강 실태조사, 사회정서역량 함양 교육, 교원 연수 및 전문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정신건강 위기학생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조기 개입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제정안은 기존 제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새로운 지원기관 및 지원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심사 과정에서 현행 제도와 중복 여부, 관련 기관 및 제도 간 역할 관계, 구체적인 집행방안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정서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 두 건이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유사 계류안건 >

의안번호 (제안일자)	법안명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2200110 (2024.6.4.)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경숙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2205850 (2024.11.25.)	학생마음건강 증진법안	서지영	-학생들에게 사회·정서 역량 함양 교육 등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마음건 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	-----	--

나. 법률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의 법률 제명(題名)은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27개의 본칙,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구성 체계 >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본칙(27개 조문)	
제1조(목적)	제15조(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
제2조(정의)	제16조(학생회복지원기관)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17조(학교지원 정신건강전문기관 등)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18조(지정취소 등)
제5조(학교의 장 등의 책무)	제19조(학생 정서행동지원조력인)
제6조(보호자의 책무)	제20조(교원의 연수지원 등)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1조(상훈 등)
제8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조(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	제23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0조(실태조사)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사회정서역량 함양 교육)	제25조(벌칙)
제12조(학생 정서행동문제 발견)	제26조(양벌규정)
제13조(학교 상담)	제27조(과태료)
제14조(학생마음건강진흥원)	
□ 부칙(1개 조문)	
시행일	

2. 주요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정서행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음건강”이란 학생이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를 넘어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상태를 말한다. 2. “정서행동문제”란 학생이 감정 또는 행동 조절의 이상·곤란으로 인하여 학습, 인간 관계 형성, 사회 적응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정서역량”이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인식·조절하고 타인과 원활히 소통·관계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포함한다) 및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 제정안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마음건강’, ‘정서행동문제’, ‘사회정서역량’, ‘학교’ 등 제정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 제정안은 ‘마음건강’이라는 용어를 법률상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음.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정책을 설명할 때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등 정책적 용례는 다수 존재하나, 현행법 체계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이라는 용어가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으며³⁾, 의료·복지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서비스 체계 또한 이에 기반하여 설계되어 있음.

이에 ‘마음건강’ 개념의 도입은 정서적 안정, 사회성 등 보다 포괄적인 심리·정서 상태를 포섭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상태’ 등은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있어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에서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필요한 세부 판단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제정안은 ‘학교’의 범위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고 있음. 해당 시설은 교육감이 지정·관리하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인정 교육기관으로 성인 학습자가 다수인 것은 하나, 최근 학교밖 청소년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다만, 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외에도 이에 준하는 학교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 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제38조의3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과학영재 학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와 같이 교육감의 일반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미치지 않는 교육기관이 포함될 수 있음⁴⁾.

이들 기관은 소관 부처 및 관리체계가 상이하므로, 제정안이 입법화 될 경우 해당 학교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이견없음 -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지원을 폭넓게 담을 필요가 있으므로 제정안의 목적규정은 적절함 - 정서·행동 장애로 진단받은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은 지원 근거의 사각지대가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정서·행동문제’를 정의하여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과 같이 학교의 범위를 폭넓게 포함하여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서울교육청: 일부수정 - 성인 및 노인 학습자 대상의 평생교육시설은 별도의 지원 체계에서 다룰 필요
○ 초등교사노동조합: 일부수정 - ‘마음건강’, ‘정서행동문제’, ‘사회정서역량’ 개념이 추상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교원이 학생의 심리·정서 상태를 객관적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화 필요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①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진흥법」을 따르고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감독한다.

나. 책무 규정(안 제3조~제6조)

제 정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상담 등 분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교육과 관련된 분야별 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학생의 마음건강 및 정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정서행동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를 통합 지원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학생의 마음건강 및 정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의 장 등의 책무) ① 학교의 장 등은 학생이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며 성장할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 및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수업 및 학사(學事)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학생의 마음건강 및 정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문제를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 내 전문기관 또는 보호자 등과 연계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자의 책무) ① 보호자는 학생이 마음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며 성장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및 학교의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정안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과 관련된 주요 주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학교의 장 등(교직원 포함), 보호자를 상정하고 각 주체별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상담 기반을 조성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감은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해결

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음.

또한 학교의 장 등은 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학교 교육환경 및 문화를 조성하고, 수업 및 학사 운영 시 학생의 마음건강 및 정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보호자는 관련 정책 및 지원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음.

- 학생의 정서행동문제는 학습, 인간관계 형성, 사회 적응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며, 그 원인 또한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교육청, 학교, 보호자 등 다양한 주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상호 협력을 유도하려는 내용은 바람직하다고 보임.

[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이견없음
- 법 제정 취지에 맞게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학생 지원을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학교현장에서의 노력과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호자의 노력 또한 필수적임
○ 시·도교육청5): 일부수정
- 학부모의 책무 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 필요
○ 교원단체6): 일부수정
- 학부모의 책무에 대한 강제성 확보 필요

5) 인천·전남

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다.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8조)

제 정 안
제8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학생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추진체계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및 학부모 등 주체별 역할 2. 관계 법령 제정·개정 등 제도 개선 사항 3. 교육·상담 등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에 관한 사항 4. 재원 확보 및 관련 인프라 구축·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해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공표하고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기본계획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4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및 그 밖에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학생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해당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음.

아울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은 국가 등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관련된 계획·시책·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고 입법목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

제정안에서는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재원 조달 방안,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임.

[제정안 관련 교육부 의견]

- **교육부: 이견없음**
 - 체계적·종합적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교육부장관의 기본계획 및 교육감의 시행계획 등 필요

라.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안 제9조)

제 정 안
제9조(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 ①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복지·건강·상담 등 유사한 성격을 심의하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2. 제14조에 따른 지역학생마음건강진흥원의 설립 또는 지정 3. 제15조에 따른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4. 제16조에 따른 학생회복지원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5. 제17조에 따른 학교지원 정신건강전문기관등의 설치 또는 지정 6. 제18조에 따른 지정취소 7. 그 밖에 위원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해결 지원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지역학생마음건강진흥원 설립 또는 지정 등 관련 추진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위원회는 학생의 복지·건강·상담 등 유사한 성격을 심의하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른⁷⁾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

7)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5조(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① 시·도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감은 시·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감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효율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에 정신건강 및 학생상담 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된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위원회와 통합 운영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학교보건법」 제17조⁸⁾에 따른 시·도학교보건위원회 역시 학생의 건강 증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학생 마음건강 정책과의 연계 측면에서 통합 운영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음.

- 다만, 안 제9조제1항제1호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은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권한 체계상 정합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제정안 관련 교육부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법률안의 목적에 따라,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청 내 기구 필요
- 다만, 기본계획은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으로, 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삭제할 필요

③ 시·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체계 구축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실적 분석·평가
3. 학생맞춤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업무의 조정
4. 제8조에 따른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지정
5.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학교보건법」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①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의 보건에 경험이 있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법제처: 일부수정**

- 기본계획은 교육부장관이 전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단일한 국가계획(안 제8조제1항)임에 비하여,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는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별로 각각 설치되는 자문위원회인 것으로 보이는바,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을 교육감 소속 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마. 사회정서역량 함양 교육(안 제11조)

제 정 안
제11조(사회정서역량 함양 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은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정안은 학교의 장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음. 한편, 보호자에 대한 교육은 교육자료 제공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 제정안은 교육부가 2025년부터 시범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중인 ‘사회정서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현재 사회정서교육은 학교급별 발달 단계에 맞춘 콘텐츠(숏폼 및 카드뉴스, 영상자료 등)를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내 6차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기본형) 내용 구성(안) >

구분	초등 저	초등 고	중	고
대상 (주학년)	1~2학년(2학년)	3~6학년(5학년)	1~3학년(1학년)	1~3학년(1학년)
교육목표	나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갈등을 적절하게 다루는 역량 함양			
핵심 역량(6)	자기 인식 및 관리, 관계 인식 및 관리, 공동체 가치의 인식 및 관리, 정신건강 인식 및 관리			
운영 시간	교과(연계)수업, 조종례시간, 자율(시간)과제, 중학교 자유학기제, 동아리활동 등 활용			
운영 교과(사)	관련 교과(사), 학교(급) 문화 조성 / ※ 선도교원 양성, 수업사례 나눔·확산			
개발 자료	총 6차시 분량			
	※ 수업시간 외에도 교사가 언제든지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5~10분가량의 단편 교육자료, 학생 자기주도 학습용 등 자료와 수업실연(사례) 동영상 등 포함			
자료형태	학생용 워크북, 교사 지도서, 교수 학습 자료(PPT, 동영상 등)			

<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활용 예시 >

- ▶ (초등학교) 정규수업시간에 놀이(활동)중심 교과 연계수업으로 활용하여 운영
- ▶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영역별 활동시간이나 교과 연계수업 위주 운영
- ▶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공강 시간, 조·종례 시간 등을 활용하여 운영

자료: 교육부,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 '24.8.

□ 동 조항은 최근 학생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생의 자기이해·감정조절·대인관계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길러 줌으로써 학교생활 적응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보호자를 교육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가정과 학교가 학생의 마음건강과 사회정서역량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는 타당함.

□ 다만, 제정안은 사회정서역량 함양 교육을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법문언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내용·시기·방법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법 해석을 둘러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교육부가 2025년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정서교육을 국가수준 교육과정 체계로 재구조화할 계획을 밝힌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교육과정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정안에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교육과정 재구조화 주요 개선사항 >

현행(2025)	개선안(2026)
- 건강·안전(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내 6차시 활동으로 구성 →연속성, 계열성을 갖춘 체계적인 교육에 한계 - 도덕, 사회 등 관련 교과의 성취기준 준용 →인성교육, 어울림프로그램 등 유사주제와 차별성이 불명확	기존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내용 요소 포함 + 국가수준 교육과정 체계로 재구조화 - 기존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국가수준의 사회정서 교육과정 전체의 틀 마련 - 학생들이 학교급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열성 있는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 학교급별 사회정서교육 성취기준 개발하고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방향 제시

자료: 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25.12.

□ 또한, 현재 다양한 인성·민주시민·마음건강 관련 교육이 병렬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교육을 추가로 의무화할 경우 교원의 부담과 교육과정 과밀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본 조항의 취지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전반에 통합하여 구현할 수 있도록 기존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등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학교보건법」은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학교 현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교육, 학교안전교육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학교보건법」상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입법례 >

제9조의3(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중독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제9조의2에 따른 보건의교육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학교안전교육

3.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③ 교육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에 학생의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마약중독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포함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이견없음

-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해 사회정서역량 함양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의무 또한 필요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일부수정

- 사회정서역량 함양 교육은 단기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기보다 국가 교육과정 차원에서 체계적 설계 필요

바. 학생 정서행동문제 발견 및 학교 상담(안 제12조 및 제13조)

제 정 안
제12조(학생 정서행동문제 발견)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정서행동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2. 「학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강검사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학부모 상담 5. 제13조에 따른 학교 상담 6.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정서행동문제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 제13조(학교 상담) ① 학교의 장 및 교원은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정서행동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 상담실에서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 해당 학생에게 정서행동문제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상담 학생의 고유식별정보, 상담일시, 상담목적, 주 호소문제, 상담내용, 특이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정보(이하 “학생상담정보”라 한다)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학생상담정보의 체계적인 기록·관리 및 타 기관 상담정보와의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학생상담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상담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학생상담정보를 기록·관리·연계하려는 경우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그 밖에 학생상담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방식, 제5항에 따른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정서행동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학생생활지도, 건강검사, 학교폭력 조사·상담 등과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음.

또한, 정서행동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교의 장 및 교원이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담 정보를 기록·관리하기 위한 학생상담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생의 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및 지원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학생 정서행동문제의 예방적 대응과 통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학교 상담과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에 따른 상담 간 구체적인 적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2025년 4월 1일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을 권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 >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
--

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또는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상담 또는 제2항에 따른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상담·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 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지원 및 제4항에 따른 상담·치료의 기준·내용 및 절차와 전문가의 기준·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제정안 제13조는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정서행동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상담’의 내용과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 구성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의 사전 절차 없이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에 따른 상담과 차이가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 각 상담을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고 상호 연계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은 법문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음.

따라서 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 등을 통해 각 규정의 적용기준과 상호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정안은 학교의 장이 학생상담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학생상담 정보를 기록·관리·연계하려는 경우에만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안 제13조제3항에서 학교의 장이 상담정보를 기록·관리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지 않았음.

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9)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학생상담정보는 같은 법 제23조10)의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하는 정보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동의를 받도록 분명하게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안 제12조 관련 >
○ 교육부: 일부수정 - 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특정 업무·교원에 국한하기보다는 모든 교원이 학생에 대한 상시적 관찰과 면담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발견을 위

9)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10)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한 조치로 모든 교원의 일상적 교육활동인 관찰·면담과 정기적 정신건강검사를 추가 규정할 필요
○ 법제처: 신중검토 - 안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조치는 이미 개별 법률에 따른 고유한 입법 목적과 요건, 수행 주체를 정하여 규율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안 제12조에서 “학생 정서행동문제의 조기 발견을 위한 조치”로서 다시 규정하는 것은 제정안과 개별법 간의 적용 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전남교육청: 일부수정 - 정서행동문제 조기 발견 등 학교에 요구하되는 업무가 확대되는 경우 학교 업무 부담이 과중될 우려가 있어,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력 및 재정 지원 근거 필요
○ 교원단체11): 신중검토 - 위기사안 발생 시, 학교와 개별 교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근거로 변질 가능
< 안 제13조 관련 >
○ 교육부: 일부수정 -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원이 정서행동문제를 학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한 의무 규정을 삭제할 필요 - 학생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시 정보시스템 외 방법으로 상담기록을 교직원 및 타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바, 상담정보의 기록·관리와 같이 공유·연계의 법적 근거도 명확화할 필요
○ 법제처: 일부수정 - 안 제13조제2항에 교원이 상담한 결과 학교의 장에 대한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인 “정서행동문제 등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판단이 상담을 수행한 교원의 주관적 판단에만 맡겨져 있고, “등”이라는 표현으로 보고 내용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보고의무의 발생 요건과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3조제3항에 따른 학생상담정보는 정보주체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바, 학생상담정보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병의원 등 학교 외부기관에 연계·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장이 학생상담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기관·제공범위·이용목적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부수정 - 안 제13조제3항의 학생상담정보 중 ‘주호소문제, 상담내용, 특이사항’ 등은 학생의 심리·정신건강 상태, 사생활의 비밀 등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 해당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건강 및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하위법령 개정 시 이를 고려하여, 동의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
○ 시·도교육청12): 신중검토

- 상담정보의 중앙 집중 시 개인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으며, 시·도에서 자체 개발 중인 시스템과 중복 우려 존재
- 상담정보 중앙시스템 기록 시, 학교상담 위축 우려가 있으며 모든 상담 내용의 기록은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

○ **교원단체¹³⁾: 신중검토**

- 상담정보는 학생의 민감정보로 정보 공유 범위와 관리 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지체없이 보고할 의무에 따라 위기 상황 발생 시 교사에게 책임 전가 우려

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교사노동조합

12) 서울, 인천, 경기

1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사. 중앙·지방 학생마음건강진흥원(안 제14조)

제 정 안
제14조(학생마음건강진흥원)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중앙학생마음건강진흥원(이하 “중앙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지원 2.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분석, 연구 등을 통한 정책 수립 지원 3. 제13조에 따른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상담 활동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제3항에 따른 지역학생마음건강진흥원의 운영 지원 5. 관련 정책 및 사업 홍보 등 대국민 인식개선 활동 6. 그 밖에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해결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국가는 중앙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중앙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 확산을 지원하고 지역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해결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역학생마음건강진흥원(이하 “지역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지역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중앙진흥원 및 지역진흥원의 설립 또는 지정,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중앙 단위의 학생마음건강 정책 전담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그 명칭을 중앙학생마음건강진흥원(이하 “중앙진흥원”)으로 하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지원, 학교 상담활동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정책 및 사업 홍보 등 기능을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지역 단위의 전문기관으로 지역학생마음건강진흥원(이하 “지

역진홍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중앙진홍원 사업의 성과 확산 지원 및 지역 학생 마음건강 증진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 현재 중앙 단위 학생 마음건강 정책은 「학교보건법」 제16조의2¹⁴⁾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음. 그러나 동 기관은 당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¹⁵⁾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 정책분석,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학생마음건강관련 기능은 ‘학생마음건강중앙지원단’ 형태의 일부 조직 단위에서 수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제정안은 학생 마음건강 분야에 특화된 전담 전

14) 「학교보건법」

제16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2. 국내외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3.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4.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위한 교직원 및 관계자,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5. 학생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6.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1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환경 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2.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3. 교육환경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4. 교육환경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보급
5. 교육환경 보호사업의 수행,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6.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연수·교육·홍보 및 그 자료의 개발
7.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8.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
9.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 등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문기관을 두어 정책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 됨.

- 다만, 중앙진흥원이 신설될 경우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수행하고 있는 학생 마음건강 관련 사업과의 기능 중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기존 인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역할 및 기능을 조정하거나, 기존 기관을 중앙진흥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¹⁶⁾을 참고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고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진흥원과 제정안 제15조의 학생마음건강 지원센터가 함께 운영될 수 있으므로, 하위법령 마련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양 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거나 통합·연계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관련 교육부 의견]

○ 교육부: 이견없음

- 학생 마음건강 정책은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 하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으로 일반 국민 또는 청소년을 대상의 정신건강 정책과 달리,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및 교직원 역량 강화 등 교육 현장에 특화된 정책 지원이 필수적
- 현재 중앙 단위의 학생 마음건강 정책은 「학교보건법」 제16조의2제1항(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설립·지정 가능)에 근거하여 유관기관을 한시적으로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기관의 중점분야에 기반한 정책 지원으로 인해 학생 마음건강 정책의 연속성·전문성 확보에 한계
- 갈수록 심화되는 학생 마음건강 위기* 대응은 국가의 핵심 책무로, 이를 전담할 전문 기관을 별도로 두는 의무 설립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제고함이 보다 적절함

16)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

아.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 및 학생회복지원기관(안 제15조 및 제16조)

제 정 안
제15조(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에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수 없거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교육지원청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학교 상담 활동 개선을 위한 교직원 연수 및 학교 컨설팅 등 상담 활동 지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이하 “지역 유관기관”이라 한다)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 3. 병원·의원 및 지역 유관기관과 학교 간 연계 지원 4. 그 밖에 지역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정하는 업무 ② 교육감은 지역 여건과 학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별 지원센터의 수 및 관할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명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학생회복지원기관) ① 교육감은 마음건강 회복 또는 정서행동문제 해결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교육·상담·치료·전문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하 “학생회복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마음건강 및 정서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학생회복지원기관에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학생회복지원기관의 종류, 기능, 설치 또는 지정, 운영, 교육 위탁, 출석 인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에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학교 상담 활동 지원, 지역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안 제15조),

교육감이 정서행동문제 해결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교육·상담·치료·전문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학생회복지원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하도록 하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학생회복지원기관에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 이는 기존 위(Wee) 프로젝트 운영체계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위(Wee) 프로젝트는 학교폭력 및 학교 부적응 등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치유 지원을 위해 2008년부터 추진되어 온 국가 차원의 학생 지원체계로, 학교 및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

위(Wee) 프로젝트의 추진체계는 학교 단위의 위클래스, 교육(지원)청 단위의 위센터, 그리고 고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중·장기 치유를 담당하는 위스쿨 및 병원형·가정형 위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위(Wee) 프로젝트 추진체계 및 기관별 주요 기능 >

기관	정의	대상
위(Wee) 클래스	단위학교에 설치한 학교상담실	위(Wee) 클래스가 설치된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
위(Wee) 센터	교육(지원)청에 설치한 학생상담 지원시설	관내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상담 희망 학생 및 단위학교에서 의뢰한 (위기)학생
위(Wee) 스쿨	고위기 학생 대상 중·장기적인 치유·교육을 제공하는 (위탁)교육 시설·대안교육기관, 대안학교 등의 형태로 직영·위탁으로 운영함	
가정형 위(Wee)센터	학생에 대한 정서적 지지, 생활환경 제공 및 보호, 상담 및 교육활동 등을 통해 가정·학교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중·장기 위탁기관	
병원형 위(Wee)센터	고위기 학생 대상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검사·상담·치료 등을 지원하는 치료·교육 위탁기관	

자료: 교육부

다만, 위(Wee) 프로젝트는 그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부 훈령인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왔을 뿐¹⁷⁾,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제정안은 지원센터(안 제15조)를 통해 위센터의 법적 근거를, 학생회복지원기관(안 제16조)을 통해 위스쿨 및 병원형·가정형 위센터의 법적 근거를 각각 마련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현재와 같이 위센터 및 위스쿨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부 훈령에만 근거를 두고 운영되는 구조는 추진체계의 지속·예측가능성이 충분히 담보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보호자 동의 및 참여 절차, 위기상황에서의 연계·의뢰 체계 등은 학생의 기본권

1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1.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Wee)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하여 종합적인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기관"이란 교육감 등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위(Wee) 클래스"란 학교단위에 설치한 학교상담실을 말한다.
4. "위(Wee) 센터"란 교육지원청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에 설치한 학생상담지원시설을 말한다.
5. "위(Wee) 스쿨"이란 시·도교육청 단위에 설치한 위탁교육시설을 말한다.
6.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이하 "전문상담사 등"이라 한다)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기관의 장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근무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한다.

과 직결되는 사항임. 따라서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학생·학부모의 권리 보장과 현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 관련 교육부 의견]

< 안 제15조 관련 >
○ 교육부: 일부수정 - 제15조는 현장에서 기 운영 중인 위 센터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들의 역할 강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필요 - (제1항제2호) 다만, 위 센터는 학교 상담 활동을 지원하는 등 업무뿐 아니라, 학교에서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 고위기 학생 등에 대한 상담 및 치유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바,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상담 및 치유 활동 추가 필요 - (제3항·제4항) 또한, 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치유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학생 지원 내용의 체계적 관리 및 향후 종합적 지원을 위해 학교에서와 같이 상담 및 치유한 내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타 기관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추가 필요 - (제5항) 지원센터에서 학생 정보를 기록·관리·제공하는 경우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권 보장
< 안 제16조 관련 >
○ 교육부: 일부수정 - 제16조는 현장에서 기 운영 중인 위 스쿨 및 병원형/가정형 위 센터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들의 역할 강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필요 - (제3항·제4항) 다만, 학생회복지원기관에서 상담 및 치유 활동을 하는 경우, 학생 지원 내용의 체계적 관리 및 향후 종합적 지원을 위해 학교 및 지원센터에서와 같이 상담 및 치유한 내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타 기관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추가 필요 - (제5항) 학생 정보를 기록·관리·제공하는 경우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권 보장

자. 학교지원 정신건강전문기관(안 제17조)

제 정 안
제17조(학교지원 정신건강전문기관 등)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정서행동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이하 “학교지원 정신건강전문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정서행동문제를 겪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담·치료 및 지역 의료기관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학교지원 정신건강전문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한 학생의 경과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추가적인 학생 지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학교지원 정신건강전문기관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학교지원 정신건강전문기관등의 설치 또는 지정,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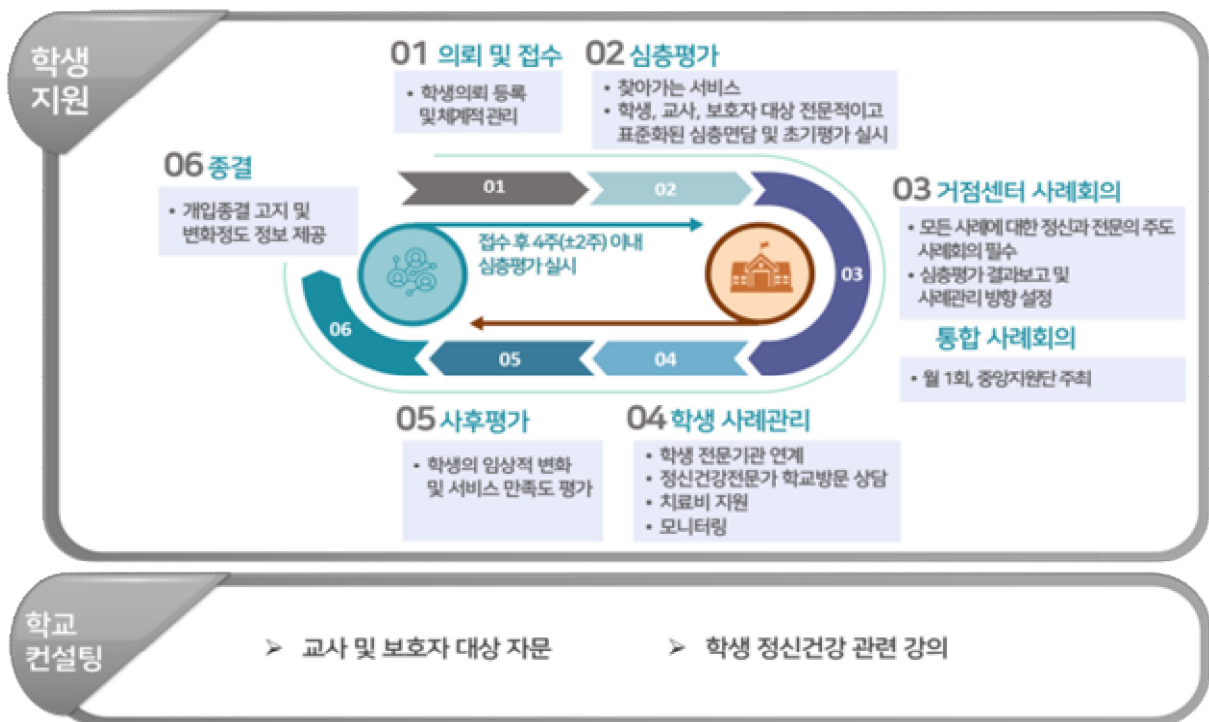
□ 제정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정서행동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지원 정신건강전문기관등을 두도록 하고, 교육감이 이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였음.

□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동 사업은 정신과 진료에 대한 학부모의 선입견, 의료취약지역 거주 등으로 병·의원 연계가 어려운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생 상담, 의료기관 연계, 보호자 설득, 교직원 대상 위기 대응 연수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긴급지원팀) 사업 개요 >

- (목적) 정신과 진료에 선입견이 있는 학생·학부모 설득을 통한 전문기관 연계 지원 및 위기학생 지도에 대한 교직원 컨설팅
 -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여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전문의 주도 사례회의를 통해 개입전략 수립·지원
- (경과) ('24) 37개 → ('25) 56개 → ('26) 65개
- (현황) 56개 센터에 전문의 113명, 그 외 정신건강전문가 217명
- (예산) ('24) 80억원, ('25) 100억원, ('26) 125억원

<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운영 절차 >



□ 동 사업은 그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됨에 따라 개입 범위와 역할, 학교와의 협력 및 정보 공유, 비용 지원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음.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의 요청 및 연계가 제한되거나, 보호자 협조 확보 및 지속적 사례관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

원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교·전문기관 간 협력체계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제정안 관련 교육부 의견]

○ **교육부: 이견없음**

-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전문적 도움을 제공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며, 기존 긴급지원팀(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 사업의 경우 현장의 만족도와 요구가 큰 상황이므로 안정적 지원 제공을 위해 법률에 비용 지원 의무 등 근거 명시 필요

차. 학생 정서행동지원조력인(안 제19조)

제 정 안
제19조(학생 정서행동지원조력인)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정서행동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상담, 조언, 보호, 회복 활동 및 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는 조력인(이하 “학생 정서행동지원조력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정서행동지원조력인 지정·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학생 정서행동지원조력인의 역할, 자격, 지정 절차, 연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교육감이 학생의 정서행동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상담, 조언, 보호, 회복 활동 및 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는 “학생 정서행동지원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인력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음.
-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¹⁸⁾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하였는바, 제정안의 학생 정서행동지원조력인은 전문상담교사의 업무를 보조하여 학교 현장의 상담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교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제정안에 명시된 학생 정서행동지원조력인의 업무는 상담, 조언, 보호, 회복 활동 및 기관 연계 지원으로, 이는 전문상담교사의 업무인 위기상담 및 지원, 지역사회(기관) 연계협력 등¹⁹⁾과 상당 부

18)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다만,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지 아니하고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어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역량체계 기반 직무연수 표준 개발 연구」,

분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력인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전문상담교사와의 역할 중복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12,167개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5,169명이 배치(42.5%)되어 있고, 전문상담순회교사는 868명에 불과한 등 배치율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조력인 제도 도입과 함께 전문상담교사의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학교급별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25.4.1. 기준) >

(단위: 교, 명)

전문상담교사(a)												전문 상담 순회 교사* (b)	총계 (a+b)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소계			
학교	인원	학교	인원	학교	인원	학교	인원	학교	인원	학교	인원		
6,192	1,830	3,292	1,789	2,387	1,462	196	58	100	30	12,167	5,169	868	6,037

자료: 교육부

[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이견없음

- 학생의 마음건강 및 정서행동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전문상담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근거하여 기 배치되고 있으나, 담당교원 및 전문상담교사의 업무수행 시, 행정절차 및 실무를 지원하고 보조하여 학교 현장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조력인 필요

○ 서울교육청: 일부수정

- 조력인의 개념, 자격 기준 등 구체화 필요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신중검토

- 상담·조언·보호·회복활동 및 기관 연계 등 조력인이 지원하는 기능이 전문상담교사의 역할과 혼선 우려

2024.12.31.

카. 교원의 연수지원 등(안 제20조)

제 정 안
제20조(교원의 연수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른 사회정서역량 함양 교육 등 이 법에 따른 학생 지원에 대한 교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41조에 따른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과 및 교직과정을 포함한다)과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원 양성기관은 예비교원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수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 방법, 인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사회정서역량 함양 교육 등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정책에 대한 교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대학·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에서 예비교원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목을 개설하여 그 이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은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으로 구성된 교직과목 중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등을 포함하여 총 22학점 이상의 이수를 요구하고 있음. 제정안은 이러한 기존 교직과목 체계 내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내용을 추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

구분	최저이수기준
	정교사(2급) 및 교사(2급)
교직이론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교직소양	○ 6학점 이상 -특수교육학 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교직실무(1~2학점 이상)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이상) -디지털 교육(1~2학점 이상, 인공지능 교육 포함)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상 포함 가능)
합계	총 22학점

□ 최근 학생 정서·행동 문제 심화, 자해·자살 위험 증가 등 학교 현장의 여건을 감안할 때, 예비교원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학생 마음건강 지원 역량을 함양하고, 현직 교원에 대해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려는 정책적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제정안 제20조의 구성은 교원 연수 및 교원양성기관의 관련 과목 개설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 인성교육의 경우, 동 법률에 따라

교원에 대한 인성교육 연수가 규정되어 있고,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과목인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에 인성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²⁰⁾.

<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및 제17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17조(교원의 연수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의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고등교육법」 제41조에 따른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과 및 교직과정을 포함한다) 등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원 양성기관은 예비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과목은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관리·대처하는 실제적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세부 내용에 “학생정서 행동발달”도 포함되어 있음. 이와 비교할 때 제정안에서 말하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역량 제고를 위한 과목”이 기존 교직과목의 내용과 중첩되는 부분이 적지 않을 수 있음.

20)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② 교직소양과목 중 “특수교육학 개론”은 교수요목에 “영재교육” 관련 단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직실무”는 “교직윤리”, “사회변화와 교육”, “진로교육”, “학교·학급경영”, “학사·인사·행정실무”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영역을 포괄하여 주제별로 운영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인성교육”, “학생생활문화”, “학생생활지도”, “학생정서행동발달” 등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기존 교직과목 및 교원 연수 체계와의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교원에 대한 의무 연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연수 과목의 조정·통합 또는 운영 방식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이견없음**

-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가 필요하고, 해당 조항은 교원 의무 연수를 추가하는 조항이 아니며, 연수 시 원격 연수 및 기존 연수의 교육과정 내 반영 등 연수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현장의 연수 부담 완화 가능

○ **교사노동조합연맹: 신중검토**

- 교원에 대한 의무 연수 부담 가중

타. 상훈 등(안 제21조)

제 정 안
제21조(상훈 등) ① 교육감은 사회정서역량 함양 교육 수행 및 학생의 정서행동문제 해결 등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기관 또는 교원 등에게 상훈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원센터에 소속된 교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훈의 대상, 기준, 평가방법 및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교육감이 사회정서역량 함양 교육의 수행 및 학생 정서행동문제 해결에 기여한 학교 또는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 소속 교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정안 제1항의 ‘상훈’은 교육감이 수여하는 표창 등 각종 포상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제2항의 ‘가산점’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에 반영하여 교원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기능함.
-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 근무의 경우 업무 강도 및 성격상 기피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보상 및 유인 제공 차원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되고, 상훈 및 가산점 제도를 통해 관련 업무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려는 입법 목적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유사 입법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교

육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학교 또는 교원에 대하여 상훈을 수여하거나 근무성적 평정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¹⁾.

□ 다만, 교육감이 수여하는 표창 등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조례에 따라 그 기준이 이미 정립되어 있고²²⁾,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가산점 역시 「교육공무원법」 제14조에 따른 위임을 근거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율되고 있음²³⁾. 따라서 현행 법령 체계 하에서도 학생 정서행동문제 해결에 기여한 학교 또는 교원에게

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⑫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22) 예시: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등

23) 「교육공무원법」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3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가산점) ②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한다.

③ 공통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8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6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중 략)

4. 교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항에 따라 교육감이나 그 밖의 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 0.1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나.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

다.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

⑤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읍·면·동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

상훈이나 가산점 부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이견없음

-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기여가 큰 주체에 대한 상훈, 가산점 등을 통한 적극적 업무 유도 및 격려 필요
- 아울러,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주체에는 학교 및 교원 외에도 법률안에 따라 설립·설치·지정되는 기관이나 직원도 포함되는 바, 상훈 대상을 폭넓게 규정함이 적절해보임

○ 교원단체: 신중검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특정 정책 영역에 대한 가산점 제도 도입 시, 현장에서 실적 중심 운영으로 변질 우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교직사회의 민감한 부분인 가산점은 충분한 논의 필요

파. 비밀 유지의 의무 및 벌칙(안 제23조 및 제25조)

제 정 안
제23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법에 따라 정서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지원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정안은 정서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학생 관련 자료를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 학생 마음건강 지원 업무의 특성상 학생의 가정환경,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내밀한 진술 등 민감정보가 다수 수집·처리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정보가 누설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학생과 보호자의 신뢰를 훼손하여 상담 및 지원 참여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마음건강 지원체계 전반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점에서 관련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제재를 규정하려는 제정안의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제정안의 규율 내용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제정안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직무상 비밀 누설은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및 제59조에서 이미 금지되고 있으며²⁴⁾,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²⁵⁾.

이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안과 동일한 금지규정을 두면서 제정안보다 높은 수준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서 별도로 더욱 엄격한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면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동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안 제23조 관련 >	
○ 교육부: 이견없음	

2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25)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9.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시·도교육청26): 신중검토 - 정당한 업무 수행에 따른 학생 상담 정보 공유도 비밀 누설에 해당하여, 비밀 유지 의무 위반으로 벌칙 적용 가능
○ 교원단체27): 신중검토 -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기관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는 상담 활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형사 처벌 규정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 초래
< 안 제25조 관련 >
○ 교육부: 이견없음 - 유사 입법례*와 같와 같은 수준의 벌칙 규정을 적용함이 필요 * 「학교보건법」 제19조, 「자살예방법」 제25조제2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부수정 -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 누설 및 목적외 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59조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에서 이에 따른 벌칙을 규정(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하고 있음 - 본 제정안의 벌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 수위에 비해 낮아 법적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중복으로 인한 법률간 정합성을 해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필요
○ 서울교육청: 신중검토 - 비밀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위기 학생에 대한 적시 개입이 위축되지 않도록 과도한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적·징계적 책임 중심으로 조정 필요
○ 교원단체28): 신중검토 -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기관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는 상담 활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형사 처벌 규정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 초래

문 의 처
02)6788-5184

26) 서울, 대구, 경기, 경북

2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